



교육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」 개정 알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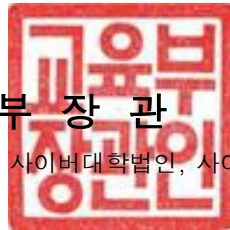
1. 관련 : 「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」 (교육부령 제286호, 2022.10.28.)
2. 「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」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, 관련 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 동 부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에서 확인 가능

- 붙임 1. 「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」 (교육부령 제286호) 1부.
2. 「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」 일부개정령 1부. 끝.

교육부장관

수신자 시도교육청, 사립전문대학, 사립대학교, 대학법인, 사이버대학법인, 사이버대학 단독법인, 사이버대학, 대학원대학법인, 대학원대학교



주무관 **백숙현** 행정사무관 **박민지** 학교정책과장 전결 2022.11.1. **강전훈**

협조자 행정사무관 **나지인**

시행 학교정책과-6048 (2022. 11. 1.) 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교육부 14동 (어진동) / www.moe.go.kr

전화번호 044-203-6454 팩스번호 044-902-6705 / judee08@korea.kr / 대한민국 공개